

한·ASEAN FTA 주요 내용

-기본협정 · 분쟁해결제도협정 · 상품무역협정

2007. 4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에 부쳐

최근 몇 년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이 21세기 경제의 차세대 주자로 각광을 받더니 올해 벽두부터는 포스트 BRICs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아세안 국가들이 젊고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으로 평가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세안과 FTA 동반자가 되기 위한 중국, 일본, EU 등 세계경제 강호들의 각축전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2005년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는 1년 반이라는 비교적 단기간내 강도 높은 협상을 통해 2005년 12월 한·ASEAN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2006년 8월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아세안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우리나라 FTA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또한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4대 수출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한·ASEAN FTA는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칠레, 싱가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동북아·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한·ASEAN 자유무역지대 완성을 위해 남아있는 서비스·투자협정의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소중한 친구이자 21세기의 든든한 동반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한·ASEAN FTA 협정이 발효하게 되면, 우선 상품무역에 있어 한·ASEAN간 무역장벽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 소비자에게는 보다 값싸게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생산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는 데 있어 아무쪼록 이 책이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4월

통상교섭본부장
김 현 종

大ト 韓

발간에 부쳐

3

I. 한·ASEAN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7

- 협상의 진행 및 경과 9
-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3

II. 한·ASEAN FTA 협정의 주요 내용

17

- 협정문의 구성 19
-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22
 -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22
 - 상품협정 28
 - 분쟁해결제도협정 56

III. 결론

65

부록: 한국과 ASEAN의 경제관계

69

- ASEAN이란? 70
- 우리나라와 ASEAN의 경제관계 77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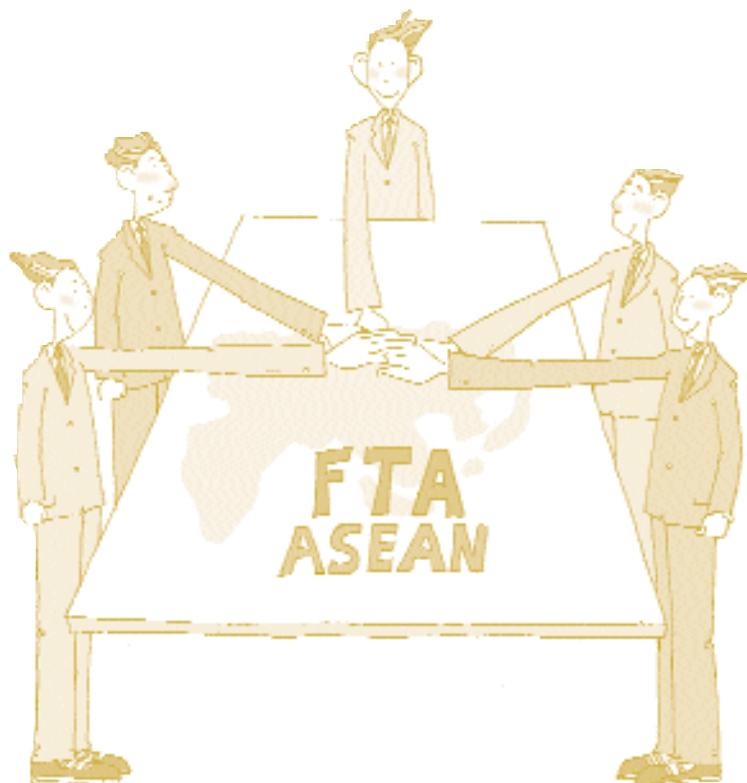
표 II-1. 한·ASEAN이 선택한 빈도수 상위 5개 품목류	36
표 II-2. 한국과 ASEAN 6의 관세 철폐 스케줄: 일반품목군	45
표 II-3. 베트남의 철폐 스케줄: 일반품목군	46
표 II-4.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관세 철폐 스케줄: 일반품목군	46
표 II-5.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 이행 약속: 한국 및 ASEAN 6	48
표 II-6.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 이행 약속: CLMV 국가	48
표 II-7. 민감품목군 분류 상한선	50
표 II-8. 일반민감품목의 관세인하 일정	50
표 II-9. 한·ASEAN FTA 우리나라 상품양허안 내용	51
표 II-10. 한·ASEAN FTA: 각국 최종 민감품목군 양허안 현황	52
표 II-11. 한국 및 ASEAN 회원국 양허안의 주요 내용	54
표 II-12. 对ASEAN 주요 수출입품목	55

그림 차례

그림 II-1. 한·ASEAN FTA 협정 구성	20
그림 II-2. 관세철폐 및 인하를 위한 품목 분류	44

I

한·ASEAN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I. 한·ASEAN FTA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의 진행 및 경과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의 진행 및 경과

한 · ASEAN FTA에 대한 논의는 2003년 10월 8일 한 · ASEAN 정상회의에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 연구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한국과 ASEAN 10개국의 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967년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으로 창설 당시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으로 시작하여 이후 1980년대 브루나이와 1990년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오늘날의 10개국이 참여하는 ASEAN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흔히 선발 회원가입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ASEAN 6로 통칭되며 신흥 가입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이들 국가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CLMV 국가로 불린다.



한 · ASEAN FTA 5차 협상

한·ASEAN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공동연구가 2004년 3~8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김한수 당시 외교통상부 FTA 담당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 자문위원이 참여하였고 ASEAN 측은 데이비드 친(David Chin)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ASEAN 10개 회원국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양측은 한·ASEAN 간의 경제자유화가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민감품목을 제외한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서비스·투자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양국간의 공동연구와는 별도로 한국은 한·ASEAN FTA 공청회(2004년 8월 4일), FTA 민간자문회의(2004년 8월 26일)를 개최하여 국내 업계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한·ASEAN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탁하여 동 FTA가 한국에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손익을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ASEAN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공동연구가 FTA 추진을 양측 정상들에게 건의함에 따라 2004년 11월 30일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양측 정상들은 2년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한·ASEAN FTA 제1차 협상은 2005년 2월 23~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홍종기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자문위원이 참석하였고 ASEAN은 데이비드 친(David Chin)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ASEAN 10개 회원국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후 서울과 ASEAN 회원국을 오가며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한·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문과 상품협정문에 관한 토의를 계속하였다.

2005년 12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ASEAN 통상장관 회의에서 한국과 ASEAN 9개국(태국을 제외)은 한·ASEAN FTA의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¹⁾ 한·ASEAN FTA의 핵심내용인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는 한·ASEAN FTA의 타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

였으며 2005년 12월 13일 한 · 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ASEAN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기본협정)」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이하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하였다.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2006년에 개최된 9차 협상부터는 품목별 양허안과 원산지규정 중 잔여 쟁점, 그리고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한 · ASEAN FTA 특혜관세 부여 문제 등 상품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전개되었으며 동시에 서비스 및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도 개시되었다. 2006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1차 한 · ASEAN FTA 협상에서 상품양허안과 원산지규정을 포함하는 한 · 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 ·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을 완료하였다.²⁾

1) 태국은 상품협상과 관련하여 한국이 쌀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하기 위해 양허제외품목을 허용하는 상품자유화 방식을 채택한 데 강한 불만을 표명함. 이후 2006년 국내문제로 인해 태국은 아직 상품무역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한 · ASEAN 양측은 태국이 추후 서명을 통해 한 · ASEAN FTA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둠.

2) 2006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 ·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무역협정은 최종 타결되었으나 일부 ASEAN 회원국가가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태국을 제외한 ASEAN 9개 회원국이 참여한 정식 서명은 2006년 8월에 개최된 한 ·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루어짐.

|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까지의 추진경과 |

□ 2003년 10월 8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ASEAN FTA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데 합의

□ 한·ASEAN FTA 공동연구 및 준비

- 2004년 3월 : 제1차 공동연구 개최(인도네시아)
- 2004년 4월 : 제2차 공동연구 개최(서울)
- 2004년 6월 : 제3차 공동연구 개최(싱가포르)
- 2004년 7월 : 제4차 공동연구 개최(서울)
 - * 2004년 8월 4일 : 한·ASEAN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 2004년 8월 26일 :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 2004년 8월 : 제5차 공동연구 개최(인도네시아)

□ 2004년 11월 30일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ASEAN 회원국의 정상들은 2년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을 선언

□ 한·ASEAN FTA 협상의 진행

- 2005년 2월 : 제1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5년 4월 :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2005년 6월 : 제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5년 7월 : 제4차 협상 개최(태국)
- 2005년 9월 : 제5차 협상 개최(서울)
- 2005년 9월 : 제6차 협상 개최(라오스)
 - * 2005년 9월 28일 : 한·ASEAN 경제장관회의 개최(라오스)
- 2005년 10월 : 제7차 협상 개최(베트남)
 - * 2005년 11월 16일 : 한·ASEAN 통상장관회의 개최(부산)
- 2005년 11월 : 제8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 * 2005년 12월 13일 한·ASEAN 정상회의 계기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
- 2006년 2월 : 제9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6년 3월 : 제10차 협상 개최(인도네시아)
- 2006년 4월 : 제11차 협상 개최(캄보디아)
- 2006년 5월 : 제12차 협상 개최(서울)
- 2006년 7월 : 제13차 협상 개최(말레이시아)

□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을 완료

2

협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한국과 ASEAN은 1989년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를 수립하였으며 2년 후인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되었다. 1997년 ASEAN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한·ASEAN 정상회의를 가진 이래 매년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ASEAN 회원국들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 방문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한·ASEAN FTA가 가지는 첫 번째 의의로는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라는 점을 들수 있다.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기본협정 서명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다. 1992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총해외투자에서 대ASEAN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2000년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다.

또한 1997~98년의 외환위기에서 회복한 ASEAN 국가들의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지던 ASEAN 시장이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ASEAN FTA는 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중국과 ASEAN간의 상품부문 FTA는 이미 지난 2005년 7월 발효되었다. 중·ASEAN FTA를 통해 중국과 ASEAN의 경제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한국과 ASEAN간의 분업체계는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산 제품은 ASEAN 시장 내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한·ASEAN FTA의 경우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중·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루어냈다.³⁾ 더욱이 중·ASEAN FTA의 상품자유화 방식과 달리,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되는 초민감품목군에 품목 기준 및 수입액 기준 3%의 상한선을 두어 ASEAN으로부터 수입은 적으나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인 농수산물은 시장개방의 여파로부터 보호하고, ASEAN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액이 많은 ASEAN의 공산품시장 보호는 제한할 수 있도록 상품자유화 방식을 설계하였다. 이는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인하에 소극적인 ASEAN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중·ASEAN FTA에 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3) 2010년까지의 자유화 목표는 ASEAN 선발 6개국에만 해당됨. 자세한 설명은 제3장 참조.

* 초민감품목군에 품목 기준 3%와 수입액 기준 3% 상한선을 두는 것이 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가?

상품 관세인하 스케줄은 크게 일반품목군(Normal Track: NT)과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 ST)으로 나누어진다. 일반품목군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품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일반품목에 해당된다. 반면에 민감품목이란 각 국가가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으로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이유로 일반품목군에 비해 관세철폐 일정이 긴 품목, 관세인하의 하한선을 가진 품목, 혹은 관세인하 혹은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관세철폐 일정이 일반품목군에 비해 지연되는 일반민감 품목군과 관세인하의 하한선이 설정되거나 혹은 관세인하 혹은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민감품목군으로 나뉜다.

초민감품목군에 품목 기준 3%의 상한선을 둔다는 것은 초민감품목에 포함되는 품목이 각 국가가 운용하고 있는 통합품목분류(HS code)상의 총품목의 3%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 협상에서 품목 기준, 예를 들어 품목 기준 3% 상한선만을 가질 경우, 각 국가는 자국이 많이 수입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민감품목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즉 품목수 기준으로 3%에 해당하는 민감품목군을 작성하더라도 이들 품목이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를 훨씬 초과해 40~50% 혹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국간의 관세철폐를 통해 교역자유화를 이루한다는 FTA 체결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ASEAN FTA에서는 품목 기준 3%와 수입액 기준 3%라는 이중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즉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품목은 품목기준으로 3%를 초과할 수 없고 동시에 수입액 기준(협상개시 바로 전 해인 2004년을 기준으로 함)으로 총 수입액의 3%가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ASEAN 국가들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면서 관심품목인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하여 최소한 부분적인 개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한국은 수입액은 많지 않지만 한국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쌀, 고추, 마늘, 닭고기, 활어 등 농수산물을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따른 동부문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ASEAN 전체와 FTA 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ASEAN 회원국과 개별적인 FTA를 추진하는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였고 태국과도 서명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축수산물 제품에 대하여 매우

4) 일본은 이들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에 있어 FTA라는 용어 대신에 포괄적 경제협력을 의미하는 CEP(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CEP는 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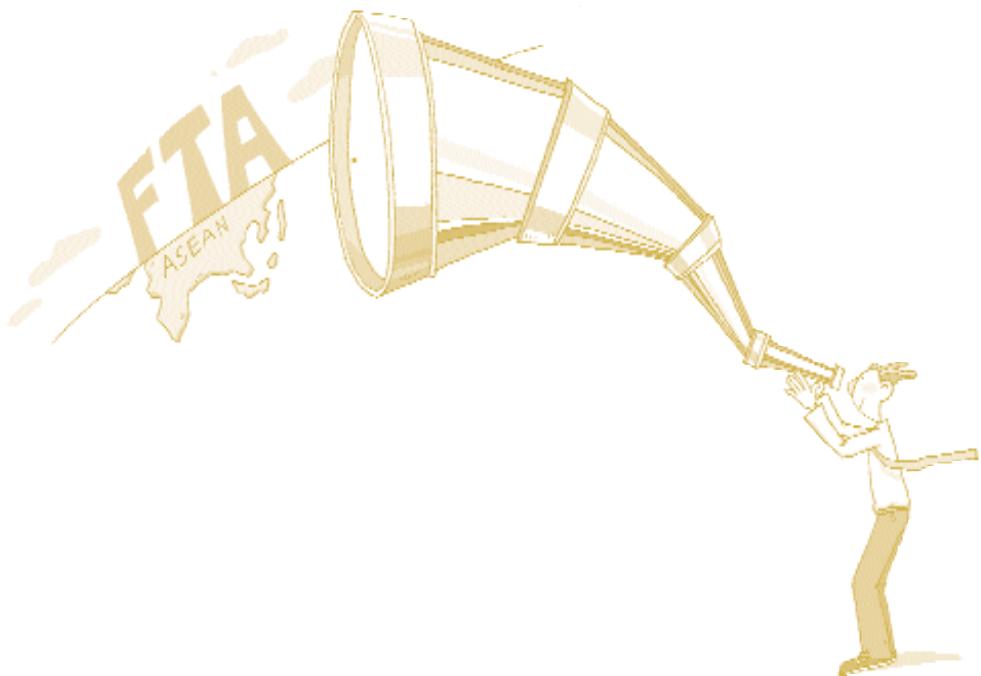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본의 경우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FTA 추진은 국내적 필요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금번 한·ASEAN FTA 체결은 일본에 비해 한발 앞서 ASEAN 시장접근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상품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은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전의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에서도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합의한 바 있으나, 싱가포르나 EFTA와는 달리 ASEAN 국가의 주력 품목은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합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추진하는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 인정이 정형화된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국제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한반도 내에서 평화적 방법을 통한 공존을 모색하는 정부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 비록 전품목이 아닌 ASEAN 회원 국가별로 HS 6단위로 100개 품목에 대한 부분적인 원산지 인정이기는 하지만 싱가포르나 EFTA 같은 선진국이 아닌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ASEAN과의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역외가공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FTA와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체적인 내용에 있어 FTA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II

한 · ASEAN FTA
협정의 주요 내용



II. 한·ASEAN FTA 협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의 구성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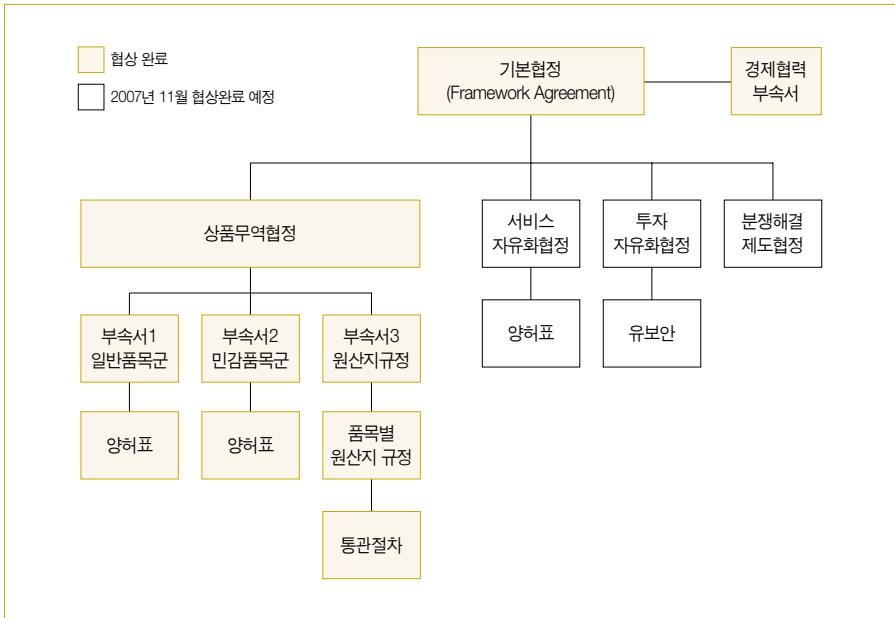
1

협정문의 구성

한·ASEAN FTA는 한국과 ASEAN 10개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양자간 협정인 동시에 복수국간 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ASEAN 10개 회원국과의 협상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존의 FTA에서 사용되는 단일협상방식이 아닌 기본협정문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투자협정을 순차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는 중·ASEAN FTA에서도 이용된 방식으로 중국의 경우 상품무역협정문에 서명한 후 서비스·투자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최근에 와서야 (2007년 1월) 서비스·투자협정에 합의하였다.

기본협정은 협정의 법적 적용범위 및 그 밖의 협정과의 관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한국과 ASEAN 양측이 본 FTA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담고 있다. 이러한 기본협정은 한·ASEAN FTA의 모법(母法)으로 2005년 12월 한국과 ASEAN 정상들은 기본 협정을 비롯하여 분쟁해결제도협정과 경제협력부속서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상품무역협정, 서비스자유화협정, 투자자유화협정에 대한 양측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6년 8월 태국을 제외한 ASEAN 회원국과 한국은 한·ASEAN 상품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한·ASEAN 상품무역협정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07년 상반기 중에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은 2007년 11월까지 타결을 목표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서비스·투자 부문의 협정이 체결되면 한·ASEAN FTA는 완결되게 된다.

그림 II-1. 한·ASEAN FTA 협정 구성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상품협정은 본문과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 그리고 원산지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에 대한 양허표와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명시한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각각의 부속서에 딸려 있다. 일반품목군은 관세철폐 대상이 되는 품목을 나열한 것으로 각 국가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별로 유연한 관세철폐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민감품목군은 일반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로 나누어지며 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관세품목의 수는 한국과 ASEAN 선발 6개국 및 베트남의 경우에는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2004년 무역통계를 기초로 ASEAN의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 한국의 경우 ASEAN 전체 국가들로부터의 총수입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발전 단계가 낮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 총관세품목의

10%를 넘지 못한다. 초민감품목은 다시 관세인하의 폭, 최소수입량, 그리고 제외 품목 등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분쟁해결제도협정은 당사국들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관하여 적용되는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패널의 설치, 구성 및 기능과 보상조치, 중재패널의 판정에 대한 이행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된 분쟁해결제도협정은 중재패널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한 · ASEAN FTA의 혜택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판정 결과 이행을 위한 강한 집행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부속서에서는 중재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경제협력분야 부속서는 총 19개 분야의 경제협력을 명시하고 있는데 통관 절차, 무역 및 투자의 진흥과 같이 교역 원활화를 위한 경제협력분야 외에도 한국이 ASEAN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송, 영화, 천연자원, 에너지, IT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 분야에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ASEAN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분야별 협정문의 주요 내용

가.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기본협정은 한·ASEAN FTA의 모법(母法)이 되고 있다. 분야별 협상대상, 협상목표, 협상시한, FTA 이행기구 등 FTA의 기본골격을 규정하면서 WTO 협정에 맞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협상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본협정은 서비스·투자 협상의 일정과 타결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한·ASEAN FTA 완료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본협정은 총 19개 분야의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을 부속서에 명시하고 부속서가 기본협정문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기본협정의 구성은 아래의 글상자에 정리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제 1 장	총칙
제 1.1 조	목적
제 1.2 조	정의
제 1.3 조	포괄적 경제관계를 위한 조치
제 1.4 조	법적 적용범위 및 그 밖의 협정과의 관계
□ 제 2 장	자유화
제 2.1 조	상품무역
제 2.2 조	서비스무역
제 2.3 조	투자
제 2.4 조	최혜국 대우

□ 제 3 장	경제협력
제 3.1 조	협력의 범위 및 이행
제 3.2 조	능력배양 프로그램 및 기술원조
□ 제 4 장	그 밖의 분야
제 4.1 조	새로운 분야로의 경제 동반자 관계 확대
□ 제 5 장	최종조항
제 5.1 조	분쟁해결
제 5.2 조	협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제 5.3 조	기본협정의 이행
제 5.4 조	사무국 및 접촉선
제 5.5 조	부속서 및 미래의 법적 문서
제 5.6 조	개정
제 5.7 조	기탁처
제 5.8 조	발효

전 문

한 · ASEAN FTA 기본협정문의 전문에서 한국과 ASEAN 회원국은 2004년 라오스의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한 · ASEAN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문의 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 · ASEAN 자유 무역지대의 설립이 양측의 관계를 보다 포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교두보 가 될 것이라는 양측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한 · ASEAN FTA는 자유화 과정에서의 포괄성, 의미 있고 실질적인 자유화, 상호이익의 증진,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규칙 및 규율과의 합치성에 기반을 두고 한국과 ASEAN의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해 무역장벽의 제거가 조화로운 개발과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동아시아내의 협력에 대한 촉매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제 1 장 : 총칙

기본협정문의 제1장에서는 한·ASEAN FTA의 목적과 포괄적 경제관계를 위한 조치, 그리고 법적 적용범위 및 그 밖의 협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먼저 협정의 목적에 대하여 기본협정은 다음의 5가지 목적을 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가. 경제·무역 및 투자 협력의 강화 및 증진
- 나. 상품 및 서비스무역 자유화 및 자유로운 투자제도의 창설
- 다.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및 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개발
- 라.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경제통합의 촉진과 당사국들간 개발 격차의 해소
- 마. 당사국들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 틀의 설치

*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ASEAN의 후발 참여국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이르며, 흔히 CLMV 국가로 불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제1.3조의 ‘포괄적 경제관계를 위한 조치’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의 8가지 조치를 통하여 한국·ASEAN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가. 상품무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 나. 서비스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
- 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투자제도의 설립
- 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특별 및 차등 대우와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대한 추가적인 유연성의 부여
- 마. 상품·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의 당사국들에 대한 유연성의 부여

- 바. 효과적인 무역 및 투자 촉진 조치의 실시
- 사. 새로운 분야로의 경제동반자 관계의 확대 및 당사국들간 경제협력의 확대
- 아. 기본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적절한 절차 및 제도의 설립

제1.4조 제2항에서 본 기본협정은 기존 협정문에서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무효화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여 기존에 한국과 싱가포르간에 체결된 한 · 싱가포르 FTA가 본 협정으로 인해 효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본 기본협정이 ASEAN 국가간이나 한국과 ASEAN 회원국간에 체결하는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이 협정 체결 후 필요에 따라 개별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제 2 장 : 자유화

제2장은 상품, 서비스, 투자 부문에서의 자유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협정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에 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규정을 점진적으로 축소 · 철폐하며(제2.1조, 제1항),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도 GATS 제5조*와 합치하는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에서” 서비스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제2.2조 제1항). 특히 제2.2조 제3항에 당사국들은 서비스무역 자유화 협상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협상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 종료 목표시한은 2007년 11월로 재조정되어 현재 한 · ASEAN 간의 서비스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WTO회원국이 체결하는 FTA 및 관세동맹에 대하여 WTO와 부합될 수 있는 자유화의 수준, WTO 통보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

투자에 있어 협상 참여국은 자유롭고, 원활하고, 투명하고 경쟁적인 투자제도를 창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투자제도의 점진적 자유화, 투자협력 강화, 투자 촉진 및 투명성 증진, 그리고 투자제도하에서의 보호의 제공을 지향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서비스 자유화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의 협상 완료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2007년 11월로 재조정되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2장 자유화의 제2.4조는 최혜국대우*에 대하여 명시하면서 “대한민국은 이 기본협정 발효 즉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모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세계무역기구 규칙 및 규율에 합치하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협정 서명 당시 WTO 회원국이 아니었던 라오스와 베트남에게도 한국은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2006년 12월 베트남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현재 ASEAN 회원국 중 WTO 비회원국으로는 라오스만이 남아있다.

*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과 조약을 새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92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각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고율관세 등 무역장벽을 쌓자 2국간 해결 방편으로 각종 조약이 맺어졌고 이것이 새로 조약을 맺는 나라도 확대 적용되면서 제도화되었다. 전후 등장한 GATT는 회원국간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혜국대우는 오늘의 통상관계에서 일반적이 되어 회원국간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WTO 비회원국에게는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⁵⁾

제 3 장 : 경제협력

한·ASEAN 경제협력에 대하여 제3장에서는 협력의 범위와 능력배양 프로그램 및 기술원조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먼저 협력의 범위와 이행에 대해서

5) 『2006 경제신어사전』에서 인용

는 제3.1조에 기술되어 있는데 통관절차, 무역 및 투자 진흥, 중소기업,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관광, 과학 및 기술, 금융서비스, 정보통신기술, 농업 · 수산업 · 축산업 · 작물 및 임업, 지적 재산, 환경산업, 방송, 건설 기술, 표준 및 적합성 판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광업, 에너지, 천연자원, 조선 및 해상 운송 그리고 영화 등 총 19개 분야를 경제협력의 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은 이행위원회의 감독하에 상호합의된 시한 내에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경제협력 부속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한국의 ASEAN에 대한, 특히 신흥 ASEAN 회원국인 CLMV 국가에 대한 능력배양 프로그램과 기술 지원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면서 제3.2조 제4항에 협력 이니셔티브 제공을 위한 개발사업들을 명시하고 있다.

제 4 장 : 그 밖의 분야

제4장에서는 한국과 ASEAN이 새로운 분야로의 경제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당사국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새로운 분야로의 경제 동반자 관계를 확대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제 5 장 : 최종조항

제5장의 최종조항에서는 분쟁해결과 기본협정 수행을 위한 무역협상위원회의 설치 및 동 협정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접촉선, 개정, 기탁처, 발효 등 협정문의 이행에 대한 최종 조율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5.1조는 기본협정의 해석 ·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분쟁해결협정에 의거하여 해결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제5.1조 제1항). 그러나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의 협상타결시점, 경제협력, 향후 새로운 분야에서의 경제동반자 관계수립 및 경제협력부속서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분쟁해결협정의 적용

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기본협정의 이행은 한·ASEAN 경제장관회의가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제5.3조 제1항) 협정발효 후 한·ASEAN FTA 이행위원회가 소집되어 한·ASEAN 경제장관회의의 위임하에 한·ASEAN FTA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관장하게 된다(제5.3조).

그 밖에도 최종조항은 사무국 및 접촉선(제5.4조), 부속서 및 미래의 법적 문서(제5.5조), 개정(제5.6조), 기탁처(제5.7조), 발효(제5.8조)에 대한 당사국의 합의를 담고 있는데, ASEAN 회원국들에 대한 기탁처 역할은 ASEAN 사무국이 담당하게 된다.

나. 상품협정

2005년 12월 체결된 기본협정을 근거로 하여 한·ASEAN은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FTA의 양대 축이 되는 상품무역 자유화와 서비스·투자 자유화 중 상품무역 자유화에 관한 협정에 합의함으로써 이후 전개되는 서비스·투자 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에 관한 부속서’와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에 관한 부속서’ 그리고 원산지 결정기준 및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기술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속서’ 등 3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4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문의 구성은 아래의 글상자에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 1 조

정의

제 2 조

국내 조세 및 규범에 관한 내국민대우

제 3 조	관세 인하 및 철폐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부속서 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제 4 조	투명성
제 5 조	원산지 규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 6 조	양허의 수정
제 7 조	WTO 원칙
제 8 조	수량제한, 비관세장벽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9 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10 조	경상수지 보호를 위한 조치
제 11 조	일반적 예외
제 12 조	안보상의 예외
제 13 조	지역 및 지방 정부
제 14 조	기구에 관한 합의
제 15 조	검토
제 16 조	부속서 및 장래의 법률문서
제 17 조	개정
제 18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제 19 조	분쟁 해결
제 20 조	기탁처
제 21 조	발효

전 문

상품무역협정 전문은 한국과 ASEAN은 2005년 12월 13일 한국과 ASEAN 회원국 정부간에 서명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근거로 기본협정내에 규정된 민감한 분야에 대한 융통성을 허용하면서 특정 시한내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에 있어 관세 및 기타 제한적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아래에 기술된 사항들에 합의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합의에 이르기에는 CLMV 국가들에 대한 참여 증진과

수출 증가를 위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CLMV 국가들에게 본 협정의 의무사항에 대한 탄력적 접근을 제시할 것임을 적시하였다.

제 1 조 : 정의

제1조에서는 본 협정문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보다 정확한 쌍방간의 이해를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실제 협정이 발효되고 이행되었을 때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단, 상품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태국의 경우 태국과 관련한 용어는 태국을 대표한 적절한 서명이 첨부된 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향후 태국의 참여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제 2 조 : 국내 조세 및 규범에 관한 내국민대우

제2조는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합치되게 다른 모든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민대우란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타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통상항해조약에서 규정되며 주로 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법인 참가, 기타 사업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상품협상에서 내국민대우는 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국내산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을 의미한다.

*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국내산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으로서 GATT의 제3조에 규정되어 있음.

제 3 조 : 관세 인하 및 철폐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에서는 품목별로 양허일정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양허안을 작성하였으나, 한 · ASEAN FTA 경우에는 전체품목에 대한 양허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각국이 자국 산업의 민감도에 따라 품목을 배정하는 방식(Modality)을 사용하였다. 한 · ASEAN FTA 상품양허안 협상에서는 Modality에 따라 각국이 자율적으로 품목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당사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양자협상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Modality 방식은 양자간 밀도있는 양허협상이 곤란한 다자간의 양허협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한 · ASEAN FTA의 상품 Modality는 전체품목(HS 6단위 5,224개)을 크게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나누고 민감품목군은 이를 다시 일반민감품목군과 초민감품목군으로 나누었으며, 초민감품목군을 다시 5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각 품목군의 ‘크기’는 품목수과 당사국간 수입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각 품목군별로 관세철폐 · 인하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양허안의 개요에 기술되어 있다.

제 4 조 : 투명성

투명성과 관련하여 1994년도 GATT 제10조가 본 협정의 일부로 이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5 조 :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대한 내용은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서 기술되어 있다.

*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이란 특정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상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규칙 및 제도를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점진적인 자유무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WTO/GATT를 통한 다자간 협상의 결과에도 기인하나 많은 부분이 양자간 혹은 특정 지역내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룩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은 참여국간의 관세인하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낮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비참여국으로 하여금 자국 상품을 참여국을 통해 우회수출을 함으로써 무임승차를 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시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규정에서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거래되는 상품의 생산·조달국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정의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적용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되는데 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국 간의 관세상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의미하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여타 무역정책상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원산지규정을 의미한다.

원산지판정 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and Produced Test)과 실질변경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먼저 상품이 일국에서 생산, 재배, 채취되었을 경우 생산국이 원산지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주로 농축수산물 등의 천연제품이 완전생산기준에 의해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품에 속한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생산 국제화의 추세 속에서 특정제품의 생산이 2국 이상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판정의 큰 틀은 상품 생산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원산지규정을 위한 기술적 요건들은 실질적변형의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 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었을 경우 어느 국가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실질적변형의 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Schedule Method), 부가가치기준(Percentage Criteria Method), 주요공정기준(Technical Test Method)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稅番)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보통 4단위(Heading) 혹은 6단위(Subheading)가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2단위(Chapter)에서의 세번변경을 요구하기도 한다.

부가가치기준은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제조·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 비율 계산에는 수입산 함량, 국내산 함량, 부품가액 등을 기준으로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주요공정기준은 각 제품의 생산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부여해주는)시켜주는 기술적인 제조·가공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주로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이용되고 있다.

양자간 혹은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주로 한 가지 실질변형 판정기준이 이용되며, 상품에 따라 세 가지 판정기준이 모두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판정기준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선택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언급된 실질변형기준으로 이용되는 방법들은 이들의 적용에 있어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제품에 적용되고 동시에 모든 목적에 부합하는 한 가지의 원산지규정 방법을 선택하여 모든 품목에 적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수 만 개에 달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위해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경직된 원산지규정의 적용은 참가국간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려는 자유무역협정의 의도에 반하여 작용할 수 있다.

경직된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완화하고 동시에 참여국 외의 제3국의 우회수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보충적 원산지규정 원칙이 이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는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누적규정, 역외가공인정(Outward Processing), 부속품 및 포장용품에 관한 허용규정,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 최소가공기준(Minimal Process), 흡수기준(Absorption/Takeover Principle or Roll-up Principle), 추적 심사 등이 있다. 이들 보충적 원산지규정 중, 최소허용기준, 누적규정, 역외가공인정, 부속품 및 포장용품에 관한 허용규정, 흡수기준 등은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그 밖에 직접운송원칙, 추적심사, 불인정공정 등은 제3국의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부가규정으로 이용되고 있다.

부속서 3에 따르면 상품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속서 3, 제3조).

- 가.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상품
- 나.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다. 나호에서 규정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라.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수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당사국 영역내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취득된 상품으로서 가호 내지 라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 및 다른 자연 발생 물질
- 바.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취득된 어로 생산품이거나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취득된 다른 어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 대하여 자연자원을 탐사할 권리를 국제법상 가져야 한다.
-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취득된 어로 생산품 및 그 밖의 수산물
- 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선상공장에서 전항에 규정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그리고/또는 만들어진 상품
- 자.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되어야 한다.
- 차.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 카.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 (1)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의 회수 용으로만 적합하여야 한다.
- 타. 가호 내지 카호에 규정된 상품으로부터만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생산에 2국 이상이 관여한 경우에는 부속서 2의 부록 2에 품목별 원산지규

정에 명시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만족하거나 부록 2에서 규정되고 있는 품목이 아닌 경우,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이 FOB* 가격의 40% 이상이거나 HS 4단위에서 세번변경(稅番變更)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 **FOB(Free On Board) 가격:** 수출품을 수출자가 선적항에서 본선까지 인도하기 전까지의 가격으로 수입국의 내국소비세가 포함되지 않는 가격

역내부가가치비율의 계산은 집적법*과 공제법* 모두 이용 가능하나 각 당사국은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모든 품목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공제법과 집적법을 이용한 역내부가가치 계산**

(i) **공제법**

$$RVC = \frac{FOB - VNM}{FOB} \times 100\%$$

(ii) **집적법**

$$RVC = \frac{VOM}{FOB} \times 100\%$$

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며 VOM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의미한다.

한 · ASEAN FTA에서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원산지인정 문제는 협상에 있어 매우 첨예한 대립을 가져온 이슈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낮은 발전단계에 있는 ASEAN 회원국을 중심으로 협상 초기에 한국이 개성공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 높은 경계심을 보였다. 부속서 3의 제6항 ‘특정품목의 취급’에서 실질적으로 역외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인정을 허용하였고 이 조항에 적용되는 특정품목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ASEAN의 특혜관세혜택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의 인정은 양측 경제장관들간의 교환각서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ASEAN 회원국은 역외(개성) 투입(재료비 외에 운송비 등 제반 비용 포함)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FOB 가격의 40% 이하이고 일방 당사국(한국) 재료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생산에 이용된 총재료 가치의 60% 이상인 경우(개성에서) 역외가공된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교환 각서에서 각 ASEAN 회원국은 개성공단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예정인 품목(232개 품목) 중 100개 품목을 선정하여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통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ASEAN 회원국들이 선정한 품목들을 보면 개성공단에 생산 또는 생산예정인 품목이 비교적 골고루 선정되었고 의류(24.8%), 시계(17.9%)의 순으로 허용한 품목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성에서 역외가공된 제품의 ASEAN 수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ASEAN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개성공단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자국의 국내산업에 위협이 되는 경우 ASEAN 각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전까지 한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측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성공단의 실시 및 시행과 관련한 부

표 II-1. 한·ASEAN이 선택한 빈도수 상위 5개 품목류

	의류	시계	신발	편물의류	전기기기 TV, VTR
ASEAN이 선택한 품목비율	24.8%	17.9%	12.8%	9.1%	7.2%
개성공단 생산(예정) 품목 비율(232개)	26.7%	12.1%	12.5%	9.9%	8.6%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속서 3의 제6조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협정이 발효하고 5년이 지난 후에(anytime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on Trade in Goods) ASEAN 회원국 각국이 개성공단을 다루는 제6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본 양해각서의 적용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ASEAN측에 안전장치를 제공하였다.

‘특별 긴급수입제한’이나 ‘5년 후 철회 조항’과 같은 ASEAN의 의견이 반영된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하나, 현재 개성공단의 상황과 한국의 진출 업체의 주력 수출시장이 미주 · 구주 시장인 점을 고려할 때, 협정 발효 5년 후에 개성공단 제품이 ASEAN 시장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 · ASEAN 정치 ·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ASEAN 회원국들이 이러한 안전장치를 발동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 6 조 : 양허의 수정

양허의 수정은 양허의 이행을 가속화하거나 신상품을 통합하기 위하여 상호간 합의하에 약정하는 경우, 그리고 당사국간의 협상 및 합의를 통해 이 협정에 따른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허를 무효화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과 양허를 해준 국가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의 결과가 무역관계를 불리하게 하지 않는 호혜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일반적 수준의 양허를 유지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 7 조 : WTO 원칙

이 조항은 당사국들은 비관세제도, 기술장벽, 검역제도, 보조금 및 상계관세*, 반덤핑제도 및 지적재산권 등에 있어 WTO 협정 부속서 1A와 1C에 따른 원칙

을 준수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

제 8 조 : 수량제한, 비관세장벽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각 당사국은 WTO의 규정에 의하거나 혹은 본 협정문의 다른 규정들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국과의 교역에 있어 상품의 수입·수출 금지나 수량제한을 가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무역의 불필요한 장벽을 초래하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비관세장벽 철폐 일정은 당사국들의 상호합의를 따르기로 하였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하여 ASEAN측은 이러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ASEAN 제품, 특히 농수산물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강제하는 취지의 문안을 협정문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협정문에 기술장벽에 관한 규제, 표준의 준비, 그리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발동에 대한 통고 절차를 위해 각 국가가 연락처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절차 규정만을 포함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이행위원회 산하에 각국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작업반'을 설치하고 연 1회 혹은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회의를 가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 9 조 : 긴급수입제한조치

한·ASEAN FTA 상품협정에서는 상품에 대한 과도기간을 협정 발효일로부터

터 관세 인하 혹은 철폐가 완결되는 시점에서 향후 7년까지로 정의하면서, 과도기간 동안에 본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 당사국들은 한·ASEAN FTA 상품협정으로 인해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 동종 산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거나 우려될 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하의 정지 또는 조치가 취해질 때 유효한 관련 상품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이나 발효일 직전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중 낮은 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부과 대상이 되는 국가로부터의 관련 상품의 수입이 총수입 비율의 3% 이하일 경우 적용될 수 없고, 이러한 조치가 발동된 경우 최초 3년간 유지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중에 과도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제 10 조 : 경상수지 보호를 위한 조치

1997~98년 심각한 외환위기를 경험하였던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당사국이 심각한 경상수지 및 외환 위기가 닥치거나 닥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국은 제한적인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당사국은 즉각적으로 다른 당사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

제 11 조 : 일반적 예외

제11조에서는 본 협정 규정의 적용에서 예외되는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다.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금 또는 은의 수출입에 관련한 조치,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 등 총 10개의 예외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제 12 조 : 안보상의 예외

제11조와 유사하게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예외되는 조치를 나열하고 있다.

제 13 조 : 지역 및 지방 정부

이 협정에 따른 의무 및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때 자국 영역내의 비정부 기구에 의한 의무 및 약속, 그리고 지역·지방 정부에 의한 의무 및 약속의 준수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 14 조 : 기구에 관한 합의

“기본협정 제5.3조에 규정된 기구가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 명령, 조정 및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본협정문 제5.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행위원회 또는 당사국 합의에 따라 이행위원회 산하 하위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상품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제 15 조 : 검토

상품협정이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이후에는 격년으로 한·ASEAN 장관회이나 이들이 지명한 대표들이 본 협정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회의를 가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민감품목군에 분류된 품목에 대한 호혜적 관세율

조치와 품목 수 등 민감품목군과 관련된 문제를 이에 대한 최초의 실행조항이 이행되는 2012년도부터 매 3년마다 검토하기로 하였다.

제 16 조 : 부속서 및 장래의 법률문서

본 협정문에 딸린 부속서와 부록은 협정문의 일부분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문서이며, 향후 추가되는 법률문서의 경우에도 그 문서가 발효됨과 동시에 협정문의 일부로 고려된다고 규정하였다.

제 17 조 : 개정

협정의 규정은 당사국들간의 ‘서면으로 상호합의된 개정’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 18 조 : 다른 협정과의 관계

본 협정 또는 본 협정으로 인하여 취해진 조치는 기존 협정에서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8조는 한 · ASEAN FTA 체결이 이보다 앞서 체결된 한 · 싱가포르 FTA에서의 양국간 합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근거조항이 되고 있다. 특히 상품교역에 있어 양국은 수출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FTA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수출업자가 한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한 · 싱가포르 FTA상으로는 무관세지만 한 · ASEAN FTA 협정을 따를 때 관세를 지불해야하는 경우, 싱가포르 수출업자는 자신의 수출품에 대하여 한 · 싱가포르 FTA에 의거하여 통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반대로 한국의 수출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각 당사국의 수출입자가 만약 한 · 싱가포르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을 것을 선택했다면, 한 · 싱가포르 FTA의 원

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그 상품에 대해서는 한·싱가포르 FTA상의 여타 상품규범이 적용된다. 이는 한·ASEAN FTA 상품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받을 때도 그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와 이 협정에 따른 여타 상품무역규범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제 19 조 : 분쟁해결

분쟁해결은 독립적으로 분리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협정을 가지고 있으며 상품협정에서는 이러한 분쟁해결제도협정에 따른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제 20 조 : 기탁처

한·ASEAN FTA 상품협정은 ASEAN 회원국들을 위하여 ASEAN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는 ASEAN 회원국인 당사국에 적용되는 것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1 조 : 발효

협정문에는 발효를 2006년 7월 1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과 ASEAN 회원국 중 최소 1개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되며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과 ASEAN 회원국 중 최소 1개국이 국내절차를 마치는 날 중, 늦은 날 다음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한다.

2007년 1월 현재 이미 ASEAN 회원국 중 몇몇 국가가 국회 비준 및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우리나라가 2007년 4월 중에 국회의 비준을 받을 경우, 협정의 발효는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 즉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된다.

또한 협정이 실제로 발효될 때까지 국회비준을 완료하지 못한 ASEAN 회원국이 있는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본 협정은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에 당사국과 이미 발효를 개시한 국가간에 협정문이 발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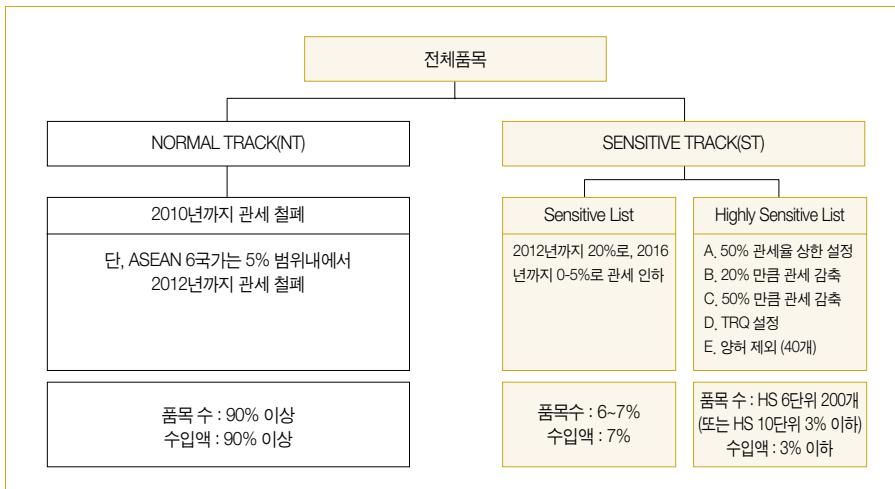
상품무역협정 서명

부 속 서 : 양허안의 주요 내용

1)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위한 품목 분류

제3조는 관세 인하 및 철폐에 관한 조항으로 2개의 부속서(부속서 1, 2)는 본 조항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모든 품목은 일반품목군(Normal Track)과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으로 분류되며 어떠한 품목을 어느 품목군에 포함하는가는 각 당사국에 의해 자발적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품목군에 포함되는 품목은 전체 관세 품목의 9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대국(ASEAN 회원국의 경우 한국, 그리고 한국의 경우 ASEAN 회원국 전체)으로부터의 2004년도 총수입액의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은 전체 관세 품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대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발 ASEAN 가입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그 발전 정도를 감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에는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그림 II-2. 관세철폐 및 인하를 위한 품목 분류



자료: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품목은 수입액 기준없이 전체 관세 품목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수입액 기준의 25%로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도내에서 각 국가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품목을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으로 분류되며 일반민감품목에 포함되는 품목은 품목 수 기준으로 6~7%, 그리고 수입액 기준으로 7%를 초과할 수 없다. 초민감품목은 또다시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의 수는 HS 6단위로 200개 또는 각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 모든 관세품목 수의 3%로 제한되며 상대국(혹은 지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⁶⁾ 이 경우에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해서는 모든 관세 품목수의 30% 제한만이 적용된다.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B. 민감품목군」 참고.

2)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A. 일반품목군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는 참여국의 발전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발전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은 한국과 흔히 ASEAN 6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CLMV 국가 중 발전 정도가 여타 3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베트남의 경우 2016년까지,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18년까지 일반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완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국가군의 관세 철폐 스케줄은 다음의 [표 II-2]~[표 II-4]에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2004년 기준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이 17%인 상품의 경우 2006년 1월 1일까지 15%로 인하하며 2007년 1월 1일까지 10%로, 2008년 1월 1일까지 8%, 2009년 1월 1일까지 5%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며 2010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표에 나타난 관세 철폐 스케줄을 통해 일반품목

표 II-2. 한국과 ASEAN 6의 관세 철폐 스케줄: 일반품목군

X =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ASEAN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X ≥ 20%	20	13	10	5	0
15% ≤ x < 20%	15	10	8	5	0
10% ≤ x < 15%	10	8	5	3	0
5% < x < 10%	5	5	3	0	0
X ≤ 5%	관세 인상 금지			0	0

자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표 II-3. 베트남의 철폐 스케줄: 일반품목군

X =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ASEAN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6년
X ≥ 60%	60	50	40	30	20	15	10	0
40% ≤ x < 60%	45	40	35	25	20	15	10	0
35% ≤ x < 40%	35	30	30	20	15	10	0-5	0
30% ≤ x < 35%	30	30	25	20	15	10	0-5	0
25% ≤ x < 30%	25	25	20	20	10	7	0-5	0
20% ≤ x < 25%	20	20	15	15	10	7	0-5	0
15% ≤ x < 20%	15	15	15	10	7	5	0-5	0
10% ≤ x < 15%	10	10	10	8	5	0-5	0-5	0
7% ≤ x < 10%	7	7	7	7	5	0-5	0-5	0
5% ≤ x < 7%	5	5	5	5	5	0-5	0-5	0
X < 5%	관세 인상 금지							0

자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표 II-4.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관세 철폐 스케줄: 일반품목군

X =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ASEAN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X ≥ 60%	60	50	40	30	20	10	0	
40% ≤ x < 60%	45	40	35	25	15	10	0	
35% ≤ x < 40%	35	30	30	20	15	5	0	
30% ≤ x < 35%	30	30	25	20	10	5	0	
25% ≤ x < 30%	25	25	20	20	10	5	0	
20% ≤ x < 25%	20	20	15	15	10	0-5	0	
15% ≤ x < 20%	15	15	15	10	5	0-5	0	
10% ≤ x < 15%	10	10	10	8	5	0-5	0	
7% ≤ x < 10%	7*	7*	7*	7*	5	0-5	0	
5% ≤ x < 7%	5	5	5	5	5	0-5	0	
X < 5%	관세 인상 금지							0

주: * 미얀마는 2010년까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율을 7.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군에 속한 상품들의 점진적 자유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품목군에 속한 상품 중 종량세의 적용을 받는 품목들은 관세 철폐 스케줄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균등 분할하여 0으로 인하하며, 2004년 최혜국 실행 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율이 이행계획보다 빠르게 0%로 인하된 경우 0%의 관세율을 유지하며 어떠한 관세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 철폐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으로 한국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일반 품목군에 속한 상품의 최소 70%에 해당하는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며, 200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 품목의 95%를, 그리고 2010년 1월 1일까지 모든 일반품목군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ASEAN 6개국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 목의 최소 50%의 관세품목에 대해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0~5%로 인하⁷⁾하며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속하는 상품의 최소 90%에 해당하는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이나 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관세품목에 한하여 2012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할 융통성을 제공하였다. 이 조항에서 “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관세품목에 대해서”라는 단서가 붙는 까닭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5%를 초과하는 융통성을 제공한다는 합의에 기인한다. 즉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5% 제한을 넘어서는 품목에 대하여 2012년까지의 관세 철폐 기한 연장을 인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ASEAN 6보다는 느슨한 적용을 받지만 후발 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보다는 타이트한 조건을 적용 받는다. 베트남은 2013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5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0~5%로 인하하며,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최소 90%의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

7) 2007년 1월 1일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정발효와 동시에 관세 인하 의무가 발생함

다. 또한 ASEAN 6와 유사하게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에 한하여 2018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관세 철폐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표 II-5.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 이행 약속: 한국 및 ASEAN 6

국가	발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국	일반품목군 70% 이상에 대한 관세 철폐		일반품목군 95% 품목의 관세 철폐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 원료		
ASEAN 6	일반품목군 최소 50% 품목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			일반품목군의 최소 90% 품목의 관세 철폐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이니 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관세품목에 대해서 2012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 나머지 일반품목군의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원료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 원료	

주: 실행은 표기된 연도의 1월 1일까지 이행되어야 함.

표 II-6.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 이행 약속: CLMV 국가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베트남	일반품목군 최소 50% 품목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		일반품목군의 최소 90% 품목의 관세 철폐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이나 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관세품목에 대해서 2012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 나머지 일반품목군의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원료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 원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일반품목군 최소 50% 품목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		일반품목군의 최소 90% 품목의 관세 철폐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이나 합의된 계획에 기재된 관세품목에 대해서 2012년 1월 1일까지 관세를 철폐, 나머지 일반품목군의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원료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 철폐 원료	

주: 실행은 표기된 연도의 1월 1일까지 이행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의 경우에는 일반품목군 관세품목의 5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0~5%로 인하하는 것을 2015년 1월1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 관세품목의 최소 90%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 품목에 한하여 2020년 1월 1일까지 관세 철폐를 2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B. 민감품목군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관세품목의 수는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2004년도 기준으로 상대방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 상한선을 가지며, 베트남의 경우에는 수입액 기준에 있어 25%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관세품목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의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하였다.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관세품목은 한국 및 ASEAN 6 국가의 경우

(i) HS 6단위 200개 관세품목 혹은 각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에서는

모든 관세품목의 3%, 그리고

(ii) 2004년 무역통계 기준으로 상대국(지역)으로부터의 총수입액의 3%

이내로 최대 상한선을 적용받는다. CLMV 국가들에게는 위의 조건 중 조건

(i)만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되는 품목 수에 대한 상한선으로 작용한다.

일반민감품목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는 이들 상품에 대한 관세를 20% 이하로 인하해야 하는 중간점검 일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합의된 기한내에 0~5%로 인하해야 한다. 이러한 중간점검 및 최종 관세 인하 일정은 국가의 발전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각 국가별 기준 시한은 [표

표 II-7. 민감품목군 분류 상한선

국가	민감품목군 상한선	초민감품목군 상한선
한국 및 ASEAN 6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총수입액 10%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그리고 총수입액 3%
베트남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총수입액 25%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모든 관세품목의 10%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 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자료: 한·ASEAN FTA 상품협정서 부속서 2

표 II-8. 일반민감품목의 관세인하 일정

국가	20%로 인하	0-5%로 인하
한국 및 ASEAN 6	2012년 1월 1일	2016년 1월 1일
베트남	2017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2020년 1월 1일	2024년 1월 1일

자료: 한·ASEAN FTA 상품협정서 부속서 2

II-8]에 정리되어 있다.

초민감품목은 다시 5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50%의 관세율 상한을 가진 그룹 A,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의 최저 20%를 삭감하는 그룹 B,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의 최저 50%를 삭감하는 그룹 C, 관세할당을 부과하는 그룹 D와 관세 인하나 철폐에서 제외되는 그룹 E에 속하는 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룹 E에 포함된 품목은 한·ASEAN FTA 상품협정의 관세 인하 및 철폐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각 국가는 HS 6단위로 최대 40개 관세품목을 그룹 E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양허 제외를 허용하는 그룹 E에 대한 ASEAN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여기는 농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를 확보할 수 있었다. 각 그룹에 속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일정은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그룹 A, B, C에 속한 품목에 대하여 한국 및 ASEAN 6 국가들은 2016년 1월 1일까지 각 그룹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

며 베트남은 2021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ASEAN 후발 참여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24년 1월 1일까지 각각의 그룹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3) 양허안 개요

우리는 총 4,742개 품목(수입액 기준 91.55%)을 일반품목군으로 개방하고, 482개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민감품목 중 200개(수입액 기준 2.81%)

표 II-9. 한·ASEAN FTA 우리나라 상품양허안 내용

		총계	일반품목군 (NT)	소계	민감품목군 (ST)	초민감품목 (HSL)
총계	품목 수	5,224 (100%)	4,742 (90.8%)	482 (9.2%)	282 (5.4%)	200 (3.8%)
	수입액 비율	100%	91.55%	8.45%	5.64%	2.81%
공산물	품목 수 (분야내 비율)	4,329 (100%)	4,182 (96.6%)	147 (3.4%)	147 (3.4%)	0 (0%)
	수입액 비율 (분야내 비율)	92.47% (100%)	88.09% (95.3%)	4.38% (4.7%)	4.38% (4.7%)	0 (0%)
농산물	품목 수 (분야내 비율)	679 (100%)	429 (63.2%)	250 (36.8%)	79 (11.6%)	171 (25.2%)
	수입액 비율 (분야내 비율)	3.54% (100%)	2.26% (63.6%)	1.28% (36.4%)	0.12% (3.6%)	1.16% (32.8%)
수산물	품목 수 (분야내 비율)	120 (100%)	73 (60.8%)	47 (39.2%)	26 (21.7%)	21 (17.5%)
	수입액 비율 (분야내 비율)	1.48% (100%)	0.56% (37.8%)	0.92% (62.2%)	0.08% (5.5%)	0.84% (56.7%)
임산물	품목 수 (분야내 비율)	96 (100%)	58 (60.4%)	38 (39.6%)	30 (31.3%)	8 (8.3%)
	수입액 비율 (분야내 비율)	2.51% (100%)	0.64% (25.2%)	1.87% (74.8%)	1.05% (42.2%)	0.82% (32.6%)

주: 품목수는 HS 6단위, 수입액은 2004년 대ASEAN 수입액 기준

표 II-10. 한·ASEAN FTA : 각국 최종 민감품목군 양허안 현황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		양허 제외
		품목 수: 200 (HS 6단위)	수입액: 3%	
상한선 (한국 및 ASEAN 6)	품목 수: 10% (HS 6단위 522개) 수입액: 10%	품목 수: 200 (HS 6단위)	수입액: 3%	품목 수: 40 (HS 6단위)
한국	품목 수: 9.23% (482개) 수입액: 8.45%	품목 수: 200개 수입액: 2.81%		품목 수: 40개
말레이시아	품목 수: 8.84% (462개) 수입액: 9.69%	품목 수: 113개 수입액: 2.99%		품목 수: 39개
인도네시아	품목 수: 8.88% (464개) 수입액: 9.57%	품목 수: 156개 수입액: 2.93%		품목 수: 40개
필리핀	품목 수: 6.70% (350개) 수입액: 9.97%	품목 수: 93개 수입액: 3.00%		품목 수: 40개
싱가폴	품목 수: 0% (0개) 수입액: 0%	품목 수: 0개 수입액: 0%		품목 수: 0개
브루나이	품목 수: 0.76% (40개) 수입액: 9.99%	품목 수: 13개 수입액: 2.99%		품목 수: 13개
베트남	품목 수: 9.90% (517개) 수입액: 23.12%	품목 수: 200개		품목 수: 40개
캄보디아	품목 수: 8.90% (465개)	품목 수: 200개		품목 수: 40개
라오스	품목 수: 10.07% (526개)	품목 수: 200개		품목 수: 0개
미얀마	품목 수: 7.52% (393개)	품목 수: 200개		품목 수: 40개

농수산물은 초민감품목으로 보호하였다.

ASEAN 각국도 상품모델리티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각 회원국별 양허안은 [표 II-10]과 같다.

4) 한국의 상품 분야별 주요 양허 현황

A. 공산품 분야

공산품 분야 관련, 한국은 공산품 분야의 대ASEAN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4,329개(품목수 기준 83%)의 공산품 모두를 원칙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다만, 147개 일부 민감품목⁸⁾을 2016년까지 0~5%까지 관세 인하 예정인 민감 품목(SL)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ASEAN 회원국들은 초민감품목의 수입액 상한선(3%) 제한으로 인해 수입 비중이 큰 자동차(4.5%), 철강(5.1%) 분야를 일반품목 혹은 일반민감품 목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ASEAN 회원국들의 이를 품목에 대한 점진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이끌어냈다. 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ASEAN 국가들은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고, 완성차의 경우에도 일부 종류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2010년 까지 관세 철폐 또는 2016년까지 0~5%로 관세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에 있어서도 경쟁상대인 중국, 일본산 제품에 비해 유리한 수준을 확보하였다.

B. 농수산물 분야

한국은 민감한 농수산물을 대ASEAN 시장개방 여파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게 허용된 200개(HS 6단위) 초민감품목의 대부분을 농림수산물으로 구성하였다. 자유화방식 결정 및 민감 품목 선정 초기 단계부터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농민단체·수산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방으로부터 한국의 농림

8)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섬유, 안전벨트 등 자동차용 부품 및 볼베어링, 직류전동기 등 전기기계

표 II-11. 한국 및 ASEAN 회원국 양허안의 주요 내용

국명	구분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		임상 체외
		제품명	제조국	제품명	제조국	
대한민국	주요음료	음료 수비율	품목 수: 90.8% 수입액: 91.55%	품목 수: 923% (482개) 수입액: 8.45%	품목 수: 207개 수입액: 2.81%	품목 수: 4.0% 쌀, 마늘, 8파, 대지, 닭고기
브루나이	주요음료	음료 수비율	품목 수: 99.24% 수입액: 90.01%	품목 수: 1.76% (40개) 수입액: 9.99%	세우살, 갈오징어, 강남콩, 보리, 옥수수	풀목 수: 13개 수입액: 2.98% 온총7기, 고무제비아, 치광부분품
캄보디아	주요음료	음료 수비율	음료 수: 91.10%	음료 수: 9.80% (465개)	냉장·냉동고, 고무제자이어, 치광부분품	풀목 수: 200개 풀목 수: 4.0% 풀리스틱제작, 방직상유유체 주방목제기구
인도네시아	주요음료	음료 수비율	음료 수: 91.12% 수입액: 90.43%	음료 수: 8.88% (464개) 수입액: 9.57%	맥주, 의류, 산불류, 소법식 간죽풀	토마토, 목육용제품, 어연봉, 가스미스코 품목 수: 156개 수입액: 2.93% 살, 막주, 발효주, 페리오픽
리오스	주요음료	음료 수비율	음료 수: 88.93%	음료 수: 10.07% (626개)	천연진주, 평판일연제품, 철강금속제	품목 수: 200개 품목 수: 0.01% 풀목 수: 3.9%
말레이시아	주요음료	음료 수비율	음료 수: 91.16% 수입액: 90.31%	음료 수: 8.84% (462개) 수입액: 9.60%	식고기, 올리브, 토마토, 커피, 감자	비, 고무제품, 미리아스판들, 난방기 품목 수: 113개 수입액: 2.98% 고래, 괴충류, 막주, 벌포성포도주
미얀마	주요음료	음료 수비율	음료 수: 92.48%	음료 수: 7.52% (693개)	두리안, 열화버단, 시무용품, 고무타이어	풀목 수: 200개 품목 수: 4.0% 품목 수: 3.9%
필리핀	주요음료	음료 수비율	음료 수: 93.90% 수입액: 10.03%	음료 수: 6.70% (360개) 수입액: 9.97%	농어, 새우, 양파, 전동용 베트	고래, 시탕수수, 베, 막주, 보드카, 위스كي 품목 수: 93개 수입액: 3.00%
싱가포르	주요음료	음료 수비율	음료 수: 100% 수입액: 100%	오리, 고등어, 아지주, 소시지, 산불류	닭, 웨지, 양배추, 마늘, 풀리스틱제작	시탕수수수, 베, 시판전등기, 와이어링세트 품목 수: 0.0% 수입액: 0%
태국	주요음료	음료 수비율	인티버핸드포, 전자접착제로, 무연 자동차 휠발유	-	-	- 품목 수: 2.00%
베트남	주요음료	음료 수비율	리드프레임, 프리미엄 무연차동차 휠발유, 무선랜	품목 수: 90.0% (517개) 수입액: 23.12% 비누, 유리제품, 공기조절기, 차부분품	풀목 수: 9.10% 수입액: 76.88%	풀액용 탐마, 평판일연제품, 모터스쿠터 품목 수: 4.0% 품목 수: 2.00%

표 II-12. 對 ASEAN 주요 수출입 품목

(단우 : 친 달리)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우리 농가소득의 대부분 구성하는 핵심품목인 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일부, 마늘, 고추, 양파, 파인애플, 녹차 등이 양허에서 원천 제외되었고, 국내 수산업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냉동 민어, 돔, 넙치, 갈치, 삼치, 조기, 꽁치 등의 신선·냉장·냉동 수산물 및 어류 통조림 등도 양허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다. 분쟁해결제도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은 협정 체결국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분쟁 발생시 중재패널의 설치 및 구성, 절차, 이해, 보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분쟁해결제도협정은 한·ASEAN FTA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성·집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분쟁해결제도협정은 기본협정, 상품협정, 분쟁해결협정 및 향후에 기본협정하에 체결될 한-ASEAN FTA 협정에 적용된다. 다만, 협정의 권리·의무의 성격상 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이 부적절한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서비스·투자협정의 협정 사항 등에는 분쟁해결제도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쟁해결제도협정의 구성은 다음의 글상자에 정리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에 관한 협정

제 1 조	정의
제 2 조	대상범위 및 적용
제 3 조	협의
제 4 조	주선·조정 및 중개
제 5 조	중재패널의 설치
제 6 조	중재패널의 구성
제 7 조	제3자

제 8 조	절차의 정지 및 종결
제 9 조	중재패널의 기능
제 10 조	중재패널 절차
제 11 조	잠정 보고서
제 12 조	최종 보고서
제 13 조	정보 및 기술적 조언
제 14 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제 15 조	보상 및 양허 또는 혜택의 정지
제 16 조	공식 언어
제 17 조	경비
제 18 조	부속서
제 19 조	개정
제 20 조	기탁처
제 21 조	발효
부속서	중재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 및 절차

제 1 조 : 정의

제1조에서는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이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 2 조 : 대상범위 및 적용

협정문 제2조에 따르면,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본 협정문은 본 협정문 자체와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그리고 협정문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본협정의 관련조항에 따라 당사국간에 체결된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상협정⁹⁾에 포함된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 또

9) 제1조의 정의에서 대상협정은 (i) 기본협정 (ii)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iii) 이 협정 (iv) 그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기본협정의 관련조항에 따라 당사국간에 체결될 협정 등 총 4 가지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이 적용되며 제소 당사국이 분쟁해결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거나 패널에 분쟁을 회부했을 때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3 조 : 협의

제소를 하는 국가는 피소된 국가가 대상협정상 자국에 발생하는 혜택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서면으로 협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소국은 피소 당사국 및 그 밖의 당사국에 협의요청을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소 당사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에 응답하여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소국이 7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제소국은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과 같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당사국들은 피소 당사국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피소 당사국이 요청을 접수한 시일에서 20일의 기간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소국은 중재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 조 : 주선 · 조정 및 중개

주선 · 조정 및 중개는 분쟁당사국이 합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취해지는 절차로 분쟁당사국은 언제든지 주선 · 조정 및 중개를 요청, 개시 및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주선 · 조정 및 중개는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패널이 구성되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합의한 개인 혹은 기관에 의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제 5 조 : 중재패널의 설치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혹은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과 같은 긴

급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쟁점이 되는 특정 조치와 제소의 사실적·법률적 근거를 담은 서면을 통해 피소 당사국에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2개 이상의 제소국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단일 중재 패널을 설치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중재패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동일한 사람이 각각의 중재패널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임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 6 조 : 중재패널의 구성

분쟁당사국이 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패널은 3인으로 구성된다. 각 분쟁당사국에서 중재패널 요청 후 30일 이내에 1인씩의 중재패널 위원을 임명하는데, 피소국 혹은 제소국이 기간내에 위원 임명을 하지 않은 경우 1인의 위원이 단독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두 번째 위원이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은 합의를 통해 의장역할을 수행할 세 번째 위원을 임명한다. 분쟁당사국간에 의장 임명이 주어진 기간 내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 각국에서 임명된 위원이 다시 30일 이내에 의장 임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는 세계 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을 임명한다. 단, 사무총장이 분쟁당사국 국민인 경우 세계무역기구내의 다음 선임자가 의장을 임명하도록 요청받는다.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의장이 임명된 날 또는 일국이 위원을 임명하지 않아서 단독위원만 있을 경우 중재패널 설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이 된다. 또한 임명된 위원이 사임하거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후임 위원은 사임하는 위원이 임명하며 위에서 언급한 방식을 통해 임명된다. 이 기간 동안 중재패널의 업무는 정지된다.

제 7 조 : 제3자

중재패널에 회부된 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며 자국의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분쟁당사국과 그 밖의 참여국들에게 통보한 국가(제3자)는 자국의 입장을 서면으로 중재패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재패널의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제3자는 중재패널 최초 회의에 제출되는 분쟁당사국의 서면 입장을 받아볼 수 있으며 중재패널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이미 자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여기는 경우에 본 협정에서 기술되는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8 조 : 절차의 정지 및 종결

중재패널은 어느 때라도 분쟁당사국들에게 우호적인 분쟁해결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합의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언제든지 분쟁해결작업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작업이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합의 후 12개월내에 분쟁당사국 중 한쪽이 요청할 경우 정지되었던 작업은 재개되며, 12개월이 초과한 경우 작업의 재개를 위해서는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 9 조 : 중재패널의 기능

중재패널은 회부된 사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피소 당사국의 조치가 대상협정의 규정에 불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그 조치를 규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중재패널은 피소 당사국에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국들이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제공한다.

제 10 조 : 중재패널 절차

중재패널의 절차는 부속서에 규정된 규칙 및 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중재패널 절차는 (i) 중재패널에서 최소한 한 번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ii) 각 분쟁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iii) 각 분쟁당사국이 잠정 보고서에 대하여 논평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iv) 비밀정보의 보호 원칙을 따른다.

제 11 조 : 잠정 보고서

중재패널은 패널설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법률 및 사실 조사 결과, 판정, 권고 및 권고 수행을 위한 수단의 제시를 포함하는 잠정 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90일 이내에 잠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상기간과 자연사유를 분쟁당사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분쟁당사국은 잠정 보고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논평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서면논평은 중재패널이 자의적으로 혹은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보고서를 재검토나 추가 검토 할 수 있다.

제 12 조 : 최종 보고서

중재패널은 잠정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 제출한다. 이는 중재패널 설치일로부터 120일, 혹은 긴급한 사안인 경우 9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쟁당사국에 서면으로 자연사유 및 예상기간을 전달하여 지연될 수 있으나 최대 180일 또는 긴급한 경우 1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제 13 조 : 정보 및 기술적 조언

중재패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된 자문보고서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중재패널내에서 투표권을 지니지는 못한다.

제 14 조 : 최종 보고서의 이행

중재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분쟁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최종 보고서 제출 2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은 중재패널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과 이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주어진 기간내에 합의에 실패했을 때, 일방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중재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으며 피소 당사국은 15일 이내에 중재패널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제안한다. 중재패널은 피소 당사국이 제안한 수단을 판단하여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15 조 : 보상 및 양허 또는 혜택의 정지

보상 및 양허 또는 혜택의 정지는 권고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양허 또는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대상협정에 불합치한 것으로 판정된 조치가 제거될 때까지, 또는 피소 당사국이 중재패널의 권고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할 때까지만 적용된다(제15조, 제6항).

또한 제소 당사국이 정지한 양허 또는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거나 중

재판널이 판정한 불합치 또는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중재판널이 그 사안을 판정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판널은 재소집된 후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판정을 제출한다.

제 16 조 : 공식 언어

모든 진행은 영어로 수행되며 제출되는 문서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제출 당사국은 영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 경비

각 분쟁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판널 위원의 비용과 자국의 경비를 부담하며 의장에 대한 경비는 분쟁당사국이 같은 뜻으로 부담한다.

제 18 조 : 부속서

첨부된 부속서는 본 협정문의 일부로, 분리되어 여겨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 19, 20, 21 조 : 기탁처, 발효, 개정

동 관련 조항은 상품무역협정과 동일하다.

III

결론



2006년 8월 상품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의 네 번째 FTA로 기록된 한·ASEAN FTA는 한국이 최초로 주요 교역국·교역지역과 체결한 첫 번째 FTA인 동시에 인구 5억의 거대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한·ASEAN FTA에서 한국은 발전정도가 상이한 ASEAN 10개 회원국과의 협상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FTA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개방의 속도도 한국보다 3년 먼저 협상을 시작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ASEAN 지역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수출과 한국기업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과 ASEAN간의 FTA가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한·ASEAN FTA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막고 ASEAN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ASEAN 시장의 풍부한 노동력과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은 중국으로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대체시장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한편 ASEAN 시장에서 한국과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현재 ASEAN의 개별회원국과 양자간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일·싱가포르 FTA, 일·말레이시아 FTA 그리고 일·필리핀 FTA가 타결되었으나 ASEAN내의 거대시장인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신흥 참여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과의 FTA 체결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ASEAN FTA는 일본에 비해 ASEAN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SEAN 회원국들의 구매력을 흡수함으로써 대ASEAN 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의 선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ASEAN FTA는 기본협정과 상품협정 그리고 분쟁해결제도협정을 타결하였고 현재 서비스 및 투자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ASEAN FTA의 완결을 위해 서비스·투자 협상의 빠른 타결은 필수적이며 서비스·투자부문에 대한 개방은 상품교역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의 방법과 범위 및 깊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부 록

한국과 ASEAN의 경제관계



1. ASEAN이란?

가. ASEAN의 정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의 약어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이다.

ASEAN은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5개 회원국으로 시작하여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1999년 현재와 같은 10개 회원국을 이루었다. 사무총장직에는 2003년부터 옹켕용(王景榮, ONG KENG YONG)이 재직 중이다.

ASEAN은 총인구 약 5억 명, 총면적 약 450만km²에 걸친 거대 시장을 이루고 있으며, 1980~90년대 연간 7~8%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 경제(Emerging economies)로, 현재 한·중·일 등과 함께 ASEAN+1 혹은 ASEAN+3 등과 같은 형태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나. ASEAN 주요 연혁

1967년 8월 ASEAN 설립-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1976년 2월 제1차 ASEAN 정상회의(발리)-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I(Bali Concord I)

1977년 8월 제2차 ASEAN 정상회의(코알라룸푸르)

1984년 1월 브루나이 가입

1987년 12월 제3차 ASEAN 정상회의(마닐라)

1989년 11월 한국과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수립

1991년 7월 한국 완전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승격

1995년 7월 베트남 가입

1997년 7월 라오스, 미얀마 가입

1997년 12월 ASEAN Vision 2020 발표(쿠알라룸푸르)

1999년 4월 캄보디아 가입

2003년 10월 제9차 ASEAN 정상회의(발리)-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II(Bali Concord II)

2006년 8월 한·ASEAN FTA 상품협정 체결

다. ASEAN 약사

■ 제1기 : 1960년대 동남아의 정치적 혼란과 ASEAN 설립

동남아 국가들의 국제협력을 위한 첫 국제기구는 ASEAN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3개국이 1961년에 설립한 ASA(Association for Southeast Asia)이다. 하지만 1960년대 초 필리핀-말레이시아 영유권 분쟁으로 ASA는 얼마가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으며, 1967년 5개국 외무장관 회동을 통해 ASEAN이 설립된 이후에야 동남아에서 국가간 협력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60년대는 필리핀-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과 강대국들의 이념 갈등으로 인한 정세 불안정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에 회원국간 상호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을 가로막는 이념적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통한 지역안보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ASEAN 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67년 태국 방콕에서의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비공식 외무장관 회

동에서였다. 상기 5개국 장관들은 ‘Sport-Shirt Diplomacy’라고 불린 4일 동안의 동 비공식 회동을 통해서 역내 경제협력과 평화협력에 합의하였고, 동년 8월에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이라고 알려진 ASEAN 선언을 통해 ASEAN이 설립되었다. 이후 ASEAN은 나머지 5개국 국가의 순차적인 가입으로 거의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자리잡았다.

ASEAN은 경제·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 및 정치적 중립을 통한 지역안보 획득을 주된 설립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1967년 발표된 ASEAN 선언(ASEAN Declaration)에도 “ASEAN은 1) 역내 국가들의 경제성장 (Economic growth)·사회발전(Social progress)·문화발전(Cultural development), 2) UN현장과 회원국의 법질서 상호존중을 통한 역내 평화·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그 설립목적으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제2기 : 1990년대 CLMV의 ASEAN 가입과 도약기

1990년대 탈냉전 시대와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ASEAN도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특히 1992년 싱가포르 선언으로 역내 경제협력 증진과 역내 특혜관세 추진으로 지역 협력체로의 본격적인 탈바꿈을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는 CLMV(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국가들의 ASEAN 가입과 ASEAN 설립 30주년인 1997년에 제정된 ASEAN Vision 2020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난 30년간의 경제 성장을 통한 인구 5억 명, GDP 6천억 달러의 거대 경제권역을 바탕으로 향후 2020년까지 ASEAN 회원국들의 무역·투자·인력·과학·교통 등에 걸친 대 통합을 통해 거대 경제권역을 이룩한다는 ASEAN의 향후 경제발전 전략이다.

■ 제3기: 2000년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

1976년 발리에서의 제1차 ASEAN 협력선언(Bali Concord I)에 이어 2003년 제9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제2차 ASEAN 협력선언(Bali Concord II)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0년까지 ‘ASEAN 안보 공동체(ASEAN Security Community)’, ‘ASEAN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SEAN 사회·문화 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의 3개 ASEAN 공동체 설립을 목표로 하는 향후 ASEAN 발전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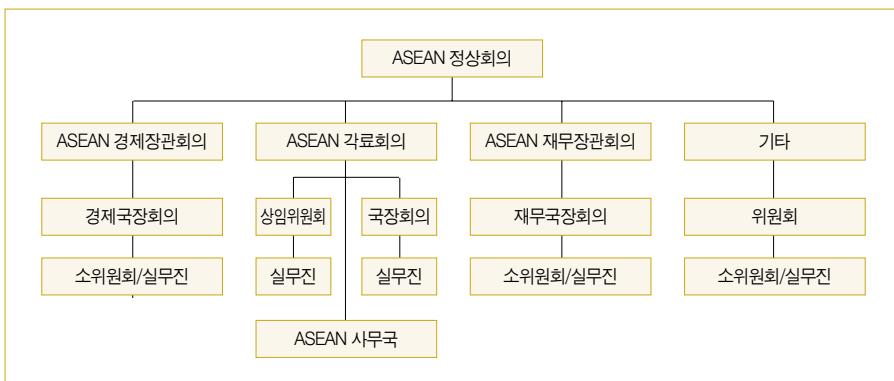
또한 2003년 AFTA(ASEAN Free Trade Area) 체제의 본격적인 발효를 시작으로 ASEAN 역내 경제통합과 AFTA+, ASEAN+1, ASEAN+3 등의 형태로 동아시아 거대 경제권역 형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협력구도에서 점차 중심적인 위치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라. ASEAN 조직과 운영

■ 정상회의와 3대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운영

ASEAN은 정상회의(ASEAN Summit) 산하에 경제장관회의(ASEAN

그림 1. ASEAN 조직도



자료 : ASEAN 사무국(www.aseansec.org)

Economic Ministers: AEM), 각료회의(ASEAN Ministerial Meeting: AMM), 재무장관회의(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AFMM)와 기타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관회의의 국장회의(Senior Economic Officials Meeting: SEOM 또는 Senior Officials Meeting: SOM)등이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마. ASEAN의 경제성장과 전망

ASEAN은 1980~90년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7~8%에 달하는 고도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총인구 약 5억 명, GDP 8천억 달러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면서 동아시아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을 대표하는 경제권역으로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ASEAN 지역의 급성장의 주요 요인으로는 저임금과 풍부한 천연자

표 1. ASEAN 회원국의 주요경제지표(2005년 기준)

구분	인구	GDP	1인당GDP	수출액	수입액	수출입액	무역수지	무역 의존도
단위	백만 명	십억 달러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백만 달러	%
필리핀	84,37	98	1,157	40,929	43,885	84,814	-2,957	87
말레이시아	25,69	131	5,090	141,781	108,390	250,170	33,391	191
싱가포르	4.35	117	26,840	226,923	186,862	413,785	40,061	354
인도네시아	220.3	281.1	1,276	86,641	63,856	150,497	22,785	54
태국	62.79	177	2,813	109,139	117,710	226,849	-8,570	128
브루나이	0.37	5.9	16,135	6.0	3.2	9	3	0
ASEAN 6	398	809	2,033	605,419	520,706	1,126,125	84,713	139
베트남	83.54	52	628	32,360	33,271	65,631	-911	125
라오스	5.92	3	484	677	1,275	1,952	-597	68
미얀마	50.54	9.8	194	2.5	2.5	5	0	0
캄보디아	13.87	5.00	360	2,714	3,679	6,393	-964	128
CLMV	154	70	456	35,754	38,227	73,982	-2,473	106
ASEAN 10	552	879	1,593	641,173	558,933	1,200,106	82,239	137

자료 : Global Insight(www.globalinsight.com)

원을 바탕으로 한 수출주도형 개발정책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들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차원의 투자 촉진과 무역자유화 추진이 동남아 고도 경제성장의 가속도를 더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EU, NAFTA 등 지역주의 대두와 발맞추어 동남아 국가들도 1992년부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설립을 추진하기에 이르러 역내 관세 철폐를 우선 목표로 동남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앞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중·일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ASEAN+1, ASEAN+3, ASEAN+6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체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국가간 소득격차, 일부 회원국의 정치불안, 종교·문화적 상이성 등 동남아시아 역내 통합을 위해 극복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CLMV(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 경제는 태풍, 지진해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자연재해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과 인플레이션으로 수년간 저성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특히 2006년에는 미 달러화의 약세로 인한 동아시아 통화의 강세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표 2. 동남아시아 각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 전망치

	2004년	2005년	2006년 전망	2007년 전망
싱가포르	8.7	6.4	6.1	4.6
태국	6.2	4.5	4.7	5.5
말레이시아	7.1	5.3	5.5	5.8
인도네시아	4.9	5.6	5.4	6.0
필리핀	6.0	5.1	5.0	5.3
베트남	7.8	8.4	7.8	8.0
캄보디아	7.7	8.4	6.3	6.4
라오스	6.9	7.2	7.3	6.5
미얀마	13.6	12.2	-	-
동남아시아 평균	6.3	5.5	5.5	5.7

자료: ADB, Asia Development Outlook 2006.

근간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저개발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CLMV 국가들 중 베트남의 경우 ‘도이 머이’로 불리는 개혁·개방 정책을 기반으로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을 우려한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공공투자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로 향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약 5% 내외의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ASEAN의 경제통합과 지역주의

■ 1990년대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거대 경제권역으로의 통합

1990년대 초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추세와 EU, NAFTA 등의 지역주의 움직임으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로 ASEAN도 거대 경제권역으로의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특히 2003년 제9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발리협약 II(Bali Concord II)을 시작으로 안보, 경제, 사회·문화 3개 분야에 대한 ASEAN 경제공동체를 2020년까지 설립한다는 목표하에 ASEAN의 거대 경제권역으로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 ASEAN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

ASEAN은 함께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한·중·일 등과 ASEAN+3, ASEAN+1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와 한·중·일 각 국가들과의 FTA의 형태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ASEAN FTA의 경우 이미 2005년 7월에 상품협정이 발효되었고 2007년 1월 서비스협정까지 체결하면서 중·ASEAN간 경제협력의 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ASEAN 전체와의 FTA 협상보다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ASEAN 주요국가와의 쌍무협상을 통한 국가단위의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06년 8월 한·ASEAN FTA 상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상품협정의 국내비준과 서비스협정 체결이 과제로 남아있어 중국에 비해 ASEAN과의 FTA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통합과 FTA 등을 통한 경제통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ASEAN 중심의 다차원적인 지역협력 구도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EAS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을 신규 참여국으로 받아들여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견제함으로써 ASEAN 중심의 지역협력 구도를 형성하였다는 점이 큰 시사점을 준다. 향후 ASEAN 역내 FTA의 활성화와 CLMV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가정한다면, 현재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도에서의 ASEAN의 주도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리나라와 ASEAN의 경제관계

가. 한·ASEAN 정치·외교적 협력

■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과정

한국은 1970년대부터 ASEAN의 경제적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ASEAN과의 대화관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ASEAN측의 대화상대국 확대불원 원칙과 ASEAN 국가들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한국과의 대화상대 수립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1989년 한·ASEAN간 부문대화상대(Sectoral Dialogue) 관계가 수립되자 이를 위해 한·ASEAN 협력기금 연 100만 달러 공여, 한·ASEAN 공동부문협력위, ASEAN 서울위원회, 한·ASEAN 민간경제협력위 설치를 추진하면서 무역, 투자, 관광 등의 분야에 걸쳐 양측의 협력관계가 시작되었다.

1991년 ASEAN 외무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완전대화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를 체결하면서 기존 부분별 대화상대 체제하의 무역·투자·관광 중심의 협력관계에서 기술이전, 개발협력, 인적자원개발 등의 분야까지 양측의 협력관계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ASEAN 협력기금도 연 20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후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2003년부터는 한·ASEAN 협력기금이 연 300만 달러로 증액되는 등, 한 ASEAN간 협력관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 10개 회원국 모두와 수교관계 형성

현재 한국과 ASEAN 10개 회원국 모두와 수교관계에 있으며 10개국 모두 서울에 공관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10개국 대부분이 남북한 동시수교의 형식으로 북한과도 수교관계에 있으나, 미얀마의 경우만 아웅산 테러 이후로 북한과 수교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다.

나. 한·ASEAN 경제협력

■ 우회수출기지에서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성장

ASEAN은 1980년대 한국 국내사양산업의 선진국 우회수출기지로 주목받으면서 한국의 주요 경제협력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당시 ASEAN은 주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우회생산기지이거나 원자재 구매를 위한 시장으로 인식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구매력 상승으로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 한·ASEAN 교역

한·ASEAN 교역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는데 외

표 3. 한·ASEAN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교역	20,332	28,116	32,376	32,851	24,493	29,957	38,308	32,368	35,151	38,704	46,408	53,497
	(16,72)	(38,28)	(15,15)	(1,47)	(-25,44)	(22,31)	(27,88)	(-15,51)	(8,6)	(10,11)	(19,9)	(15,28)
수출	12,484	17,979	20,305	20,367	15,351	17,709	20,134	16,459	18,400	20,254	24,025	27,433
	(23,49)	(44,02)	(12,94)	(31)	(-24,63)	(15,36)	(13,69)	(-18,25)	(11,79)	(10,08)	(18,62)	(14,19)
수입	7,848	10,137	12,071	12,484	9,147	12,248	18,174	15,915	16,755	18,458	22,383	26,064
	(7,36)	(29,17)	(19,08)	(3,42)	(-26,73)	(33,9)	(48,38)	(-12,43)	(5,28)	(10,16)	(21,26)	(16,45)
수지	4,637	7,841	8,233	7,881	6,205	5,463	1,962	542	1,644	1,795	1,641	1,370
교역량	203,706	266,440	287,840	288,737	226,152	263,622	332,738	291,534	314,433	372,627	478,200	545,542
비중	10.0	10.6	11.2	11.4	10.8	11.4	11.5	11.1	11.2	10.4	9.7	9.8

주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교역비중은 한국의 대외총교역 대비 ASEAN의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4. 우리나라의 대ASEAN 10대 수출입 품목(2005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¹⁾	품 목	수 출		수 입	
		금액	비중 ²⁾	금액	비중
1	반도체	5,242	19.1	반도체	5,921
2	석유제품	3,473	12.7	천연가스	4,080
3	무선통신기기	1,647	6.0	원유	3,460
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94	2.9	컴퓨터	1,421
5	철강판	1,391	5.1	석유제품	646
6	자동차	1,226	4.5	석탄	743
7	합성수지	983	3.6	유선통신기기	306
8	컴퓨터	972	3.5	동광	506
9	편직물	552	2.0	정밀화학원료	228
10	영상기기	339	1.2	제지원료	334

주 : 1) 수출(입) 금액 순위임.

2)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MTI 3단위 기준.

환위기 이전의 경우 1992년 수출 약 90억 달러에서 1996년 약 200달러로 2배 이상 확대되었고 무역수지도 1992년 19억 달러 흑자에서 1996년 82억 달러 흑자로 늘어나는 등, ASEAN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한국의 주요 흑자시장이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한·ASEAN간 교역량이 급락하였으나 2000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국면으로 전환하여,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의 5대 교역시장이며 총교역액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 대상으로 성장하였다.

금융위기 발생이후 ASEAN 현지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한 현지생산 및 판매 기반 축소와 대중국 교역·투자 증가 등으로 한·ASEAN 교역은 완만한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으나, 한·ASEAN FTA 체결과 ASEAN 시장에서의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ASEAN 교역에서는 반도체가 전체 교역량의 20%를 넘어서면서 교역품목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밖에 수출은 석유제품과 무선통신 기기를, 수입은 천연가스와 원유 등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ASEAN 투자

ASEAN 지역은 저임금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우회수출기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ASEAN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현지시장을 겨냥한 투자도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교역 기반 붕괴로 인해 대ASEAN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표 5. 우리의 대ASEAN 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누계
대 ASEAN 투자(A)	774,338	1,057,446	736,611	476,237	722,988	536,238	654,804	1,277,577	709,110	920,360	7,865,709
총 해외 투자(B)	7,019,067	6,104,722	5,837,154	5,111,039	6,090,953	6,389,762	6,347,713	5,925,218	8,062,638	9,165,914	66,054,180
A/B	11.0	17.3	12.6	9.3	11.9	8.4	10.3	21.6	8.8	10.0	11.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반대로 ASEAN국가들의 대(對)한국 투자는 1995년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점차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외국인투자 전체 누계 금액의 1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표 6. ASEAN 각국의 대(對)한국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누 계
인도네시아	0.5	3.9	1.0	1.1	7.1	0.1	0.6	0.3	75.3	25.7	116	
태국	0.6	0.7	3.5	0.0	0.1	0.4	0.3	0.9	2.4	4.0	13	
브루나이	0.0	0.0	0.0	8.5	0.1	0.5	0.0	0.3	0.0	0.0	9	
베트남	0.0	0.1	0.0	0.0	0.0	0.2	0.4	0.1	0.0	1.1	2	
싱가포르	46.6	45.5	1,183.8	414.1	304.2	189.8	146.2	235.9	376.0	388.8	3,331	
필리핀	0.1	0.0	3.0	0.1	0.2	0.5	1.3	29.8	0.4	10.7	46	
말레이시아	672.5	722.1	262.7	1,793.9	1,408.2	784.8	210.0	417.3	167.0	210.9	6,649	
라오스	0.0	0.0	0.0	0.0	0.0	0.0	0.2	0.0	0.0	0.0	0	
미얀마	0.0	0.0	0.0	0.0	0.0	0.2	0.1	0.0	0.2	0.1	1	
캄보디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ASEAN의 对한국총 투자(A)	720.3	772.2	1,454.1	2,217.7	1,720.0	976.5	359.1	684.6	621.5	641.4	10,167	
외국인 총 투자(B)	3,202.6	6,971.1	8,852.6	15,531.4	15,249.6	11,286.2	9,092.6	6,469.1	12,792.0	11,563.5	101,011	
A/B	22.5	11.1	16.4	14.3	11.3	8.7	3.9	10.6	4.9	5.5	10.1	

자료 : 산업자원부

■ 한 · ASEAN 특별 협력기금 사업

한국은 1989년 한 · ASEAN 부문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설립시 합의한 연 100만 달러의 협력기금을 제공키로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1991년 한 · ASEAN 대화가 완전대화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확대되면서 협력기금 규모가 기존 연 100만 달러에서 연 200만 달러로 확대된 후, 한 · ASEAN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2005년부터는 연 300만 달러로 규모가 추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 · ASEAN 특별협력기금(ROK-ASEAN Special Cooperation Fund)

은 한·ASEAN간 교역, 투자, 관광, 기술이전, 개발협력, 인적자원개발 등의 분야에 걸쳐 양측이 합의하는 각종 사업에 사용되는데, 한·ASEAN 공동기획심의위원회(JPRC)에서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형식으로 집행된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집행된 한·ASEAN 협력사업은 총 110여 개로 통상, 투자, 관광, 과학기술 및 인력개발 분야에 대한 협력증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촉매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양측 지도층 인사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으로 한·ASEAN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7. KOICA 무상원조 국별 지원 실적(1991~2005년)

(단위: 천 달러)

국가 \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라오스	5	6	11	1	69	437	825	216	297	629	680	1,419	2,028	3,379	2,119
말레이시아	191	137	193	160	89	130	144	74	103	259	128	86	139	120	122
미얀마	231	203	290	392	629	895	379	551	466	730	651	1,574	1,460	2,045	3,407
베트남	21	316	995	2,281	3,303	3,653	2,770	3,127	6,193	4,864	4,814	4,706	3,515	9,789	9,290
브루나이	-	-	-	18	-	-	38	13	16	50	10	17	26	21	19
싱가포르	-	-	-	11	-	5	-	3	4	-	-	-	-	-	-
인도네시아	331	1,240	1,143	1,564	1,232	1,690	2,162	1,526	1,903	1,984	1,939	2,770	2,613	6,545	9,305
캄보디아	29	0	30	8	31	247	1,834	301	297	653	1,056	1,765	2,341	3,341	5,813
태국	194	508	316	445	648	1,148	730	827	379	651	599	812	904	1,990	3,150
필리핀	463	688	930	759	914	850	655	509	539	2,223	3,038	1,811	5,964	6,366	5,059
ASEAN 총계	1,465	3,099	3,908	5,640	6,914	9,056	9,538	7,147	10,197	12,044	12,915	14,960	18,990	33,596	38,284
KOICA 협력사업비	22,840	29,386	30,448	38,295	49,228	53,741	55,473	38,442	37,930	45,353	54,010	62,070	124,089	177,700	210,015
접유율	6.4	10.5	12.8	14.7	14.0	16.9	17.2	18.6	26.9	26.6	23.9	24.1	15.3	18.9	18.2

자료 : KOICA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지원사업

1991년 한국과 개도국간의 우호협력 및 상호교류 증진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연수생 초

청, 해외봉사단 파견, 물자공여, 긴급원조, 프로젝트, 개발조사 등의 형태로 1991년부터 ASEAN에 대한 무상원조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ASEAN에 대한 KOICA 무상지원사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9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해왔으며, 최근 들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대ASEAN 지원 비중이 다소 축소되었으나(2003년 약 15%) 쓰나미 피해로 인한 긴급원조 등으로 인해 총지원금액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대ASEAN 지원사업의 형식은 기존의 연수생 초청이나 해외봉사단 파견 중심의 사업보다는 현지 개발계획을 고려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프로젝트사업과 개발조사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개발수요 및 우선순위를 우리의 비교우위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국별 전략분야 선정을 통한 집중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원 방향도 ‘소액 다국가 지원’에서 점차 ‘중점국가 중심 지원’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다. 한류(韓流)와 문화교류

문화교류에 있어서 한류는 동남아에서는 가히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배우 장동건, 김남주 등이 출연한 드라마의 성공적인 보급이 동남아에서의 한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 드라마의 본격적인 인기몰이로 인해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온라인게임, 한국어 등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현재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영화·드라마

현재 동남아 한류의 중심지인 태국의 경우 2002년 ‘가을동화’를 시작으로

각 방송사마다 경쟁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의 성공으로 이미 겨우내 된 ‘대장금’의 경우는 태국 현지에서 소설책과 CD로도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일부 인기 드라마에 출연한 연예인의 경우는 태국 현지에서 국빈급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인기 연예인의 방문처마다 명소로 지정되는 등 태국에서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태국 시청자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배우 장동건, 김남주의 성공적인 데뷔를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는 단연 최고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베트남 전체 드라마의 절반 이상을 한국 드라마가 차지한 적도 있을 정도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시청률이 높다. 한편 배우 김남주가 광고 모델로 나선 한국 L모 화장품은 베트남 시장에서 프랑스, 일본제품을 제치고 판매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 드라마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상승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대중음악

드라마와 더불어 한국 대중음악도 동남아시아 한류의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성댄스그룹인 베이비복스의 성공적인 태국 진출을 시작으로 비, 세븐, 신화 등이 동남아 일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가수 비의 경우 월드투어 공연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캐나다 순으로 기획할 정도로 동남아시아는 한국 댄스 가수들의 주요 진출처로 부상하였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회 SEED AWARD’에서 댄스그룹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가 각각 ‘아시아 최고 인기가수상’과 ‘아시아 최고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태국 현지의 한국 댄스음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 한국어 교육 열풍

동남아에서의 한류는 방송·연예 분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

국어 배우기 열풍으로도 이어져 베트남의 경우 한국어과의 입시경쟁이 치열해 영어영문과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다. 태국의 경우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어과가 개설된 대학은 지방 촌부리 소재의 부라파대학교 1곳뿐이었지만 현재 8개 대학으로 증설되는 등 동남아 일대의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나날이 확산 일로에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2006년 12월 태국, 베트남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에 나섰으며, 현지 한국어 교사와의 간담회 내용을 향후 한국어 보급정책에 반영키로 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한국어 보급에 나서고 있다.

■ 온라인 게임

동남아시장에서의 한국 온라인게임은 중국, 대만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도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중국 다음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이 동남아이며, IT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태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국 온라인게임에 대한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동남아는 아직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국가가 많아 온라인게임 시장이 완전히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온라인게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태국의 경우는 한국 온라인게임 ‘라그나로크’가 이미 ‘국민 게임’이라는 호칭을 얻은 바 있으며, 청소년들의 지나친 몰입을 우려한 태국 정부가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규제하는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였다. 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또 다른 온라인게임인 ‘뮤’의 경우는 태국 현지에서 ‘미스뮤’ 선발대회가 열릴 정도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고, 베트남에서도 한국 온라인게임의 인기는 ‘뮤’로 시작되어 폭넓은 사용자 수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대표 온라인 게임으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오디션’이 홍콩,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접속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2006년 태국 최고의 온라인게임으로 선정되는

등, 기존 한국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성공적인 진출을 바탕으로 향후 업체들의 동남아 진출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온라인게임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 시장성장이 빠르다는 특성을 가진 반면 IT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IT 인프라가 열악한 동남아 시장에서는 현지 정부 및 주요 업체와 공동으로 IT 인프라 조성 사업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반(反) 한류의 등장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증가

현재 한류로 인해 동남아 현지에서의 한국산 가전제품, 의류, 화장품 등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직접적인 효과는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류가 자국문화 보호 움직임을 유발하여 일부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 연예인과 한국 문화에 대한 흡집내기 식의 보도가 발생하는 등 ‘한류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반(反)한류 움직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한류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이어나갈 정책적인 지원과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FTA지역교섭과
전화: 02)2100-8118 FAX: 02)2100-8097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화: 02)3460-1087 FAX: 02)3460-1044
<http://www.kiep.go.kr>